

# 원주캠퍼스 대학교회 내규

제정일 : 2008. 01. 08.

담당부서 : 원주대학교회(033-760-2173)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교회라 칭한다.

제2조(주소)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 본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그 지역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예배, 교육, 선교, 봉사 및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.

제4조(구성) 본 교회는 등록된 교인 및 출석인들로 구성한다.

## 제 2 장 조 직

제5조(교역자) ① 본 교회에는 담임목사와 전도사를 두며, 필요에 따라 부교역자를 둘 수 있다.

② 담임목사는 교목실장이 겸직하거나,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임교목 가운데서 교목실장이 위임할 수 있다.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임기를 따르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부교역자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(혹은 공채)에 의해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,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교회위원회) ① 본 교회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교회위원회를 둔다.

② 교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

가. 당연직 위원

- 담임목사(위원장)
- 부교역자
-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생활관장

나. 임명직 위원: 교회내 부서장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
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며, 운영위원은 교회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
가. 예배부

나. 교육부

다. 선교부

라. 봉사부

마. 친교부

바. 재정부

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교회의 제 기관과 모임

제8조(기관)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도움을 주고, 교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.

① 교회학교

② 성가대

③ 대학생회

④ 구역회

⑤ 기타 교회위원회가 인정하는 모임

제9조(회칙운용) 각 기관은 자체 회칙을 만들어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교회의 재정

제10조(교회재정) ① 본 교회는 자체 헌금 및 외부 후원금과 소속기관(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)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.

② 본 교회의 회계는 <본 대학 예산-결산 규정>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,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③ 본 교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, 집행하고, 그 결산을 회계연도 말에 교회위원회에 보고한다.

## 제 5 장 규정의 개정 및 시행세칙

제11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제12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